

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3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
시설관리공단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이에 발령한다.

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  이 

2011년 11월 25일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 6 호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중 “산본동 962-1번지”를 “산본로 267(금정동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실장 신 현 통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최 중 환 (390-7616)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포시 <u>산본동 962-1번지</u>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--- ----- ---<u>산본로 267(금정동)</u>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실제 운영되는 주된 사무소와 일치</p> <p>○ 도로명 주소 사용</p>